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 는 외무영사직 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90점 이상	87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385점 이상	452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 (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